

(12)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출원

(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43) 국제공개일  
2010년 3월 11일 (11.03.2010)

PCT

(10) 국제공개번호  
WO 2010/027244 A2

- (51) 국제특허분류: G06Q 30/00 (2006.01)
- (21) 국제출원번호: PCT/KR2009/005090
- (22) 국제출원일: 2009년 9월 8일 (08.09.2009)
- (25) 출원언어: 한국어
- (26) 공개언어: 한국어
- (30) 우선권정보: 10-2008-0088528 2008년 9월 8일 (08.09.2008) KR
- (72) 발명자: 겸
- (71) 출원인: 남기원 (NAM, Ki-Won) [KR/KR];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 원빌라트 102호, 135-080 Seoul (KR).
- (72) 발명자: 겸
- (75) 발명자/출원인 (US에 한하여): 차지혁 (CHA, Ji-Hyuk) [KR/KR];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 원빌라트 102호, 135-080 Seoul (KR). 김평택 (KIM, Pyong-Taek) [KR/KR];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773, 133-160 Seoul (KR).
- (74) 대리인: 허성원 (HUH, Sung-Won) 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3층, 137-912 Seoul (KR).

(81)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E, AG, AL, AM, AO, AT, AU, AZ, BA, BB, BG, BH, BR, BW, BY, BZ, CA, CH, CL, CN, CO, CR, CU, CZ, DE, DK, DM, DO, DZ, EC, EE, EG, ES, FI, GB, GD, GE, GH, GM, GT, HN, HR, HU, ID, IL, IN, IS, JP, KE, KG, KM, KN, KP, KZ, LA, LC, LK, LR, LS, LT, LU, LY, MA, MD, ME, MG, MK, MN, MW, MX, MY, MZ, NA, NG, NI, NO, NZ, OM, PE, PG, PH, PL, PT, RO, RS, RU, SC, SD, SE, SG, SK, SL, SM, ST, SV, SY, TJ, TM, TN, TR, TT, TZ, UA, UG, US, UZ, VC, VN, ZA, ZM, Z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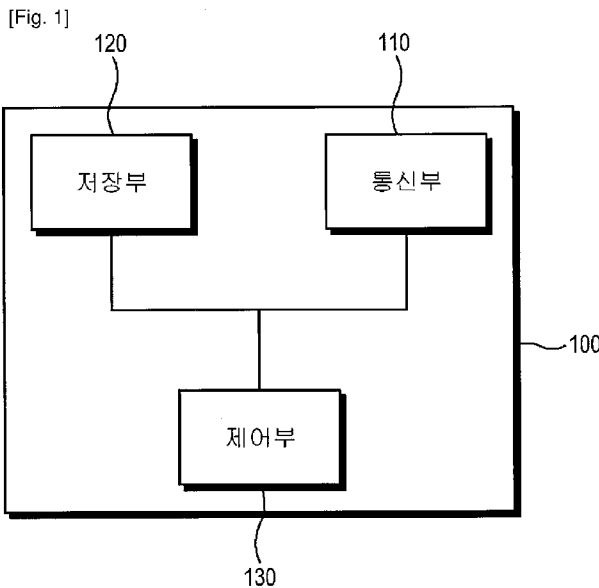
(84)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RIPO (BW, GH, GM, KE, LS, MW, MZ, NA, SD, SL, SZ, TZ, UG, ZM, ZW), 유라시아 (AM, AZ, BY, KG, KZ, MD, RU, TJ, TM), 유럽 (AT, BE, BG, CH, CY, CZ, DE, DK, EE,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T, LU, LV, MC, MK, MT, NL, NO, PL, PT, RO, SE, SI, SK, SM, TR), OAPI (BF, BJ, CF, CG, CI, CM, GA, GN, GQ, GW, ML, MR, NE, SN, TD, TG).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 없이 공개하며 보고서 접수 후 이를 별도 공개함 (규칙 48.2(g))

(54) Title: SERVER APPARATUS FOR ONLINE PRODUCT SALES, AND PRODUCT SALES METHOD THEREOF

(54) 발명의 명칭: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



110 ... Communication unit  
120 ... Storage unit  
130 ... Control unit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server apparatus for product sales which sells products online, and a product sales method thereof. More specifically, the server apparatus of the invention includes: a communication unit that communicates with plural user terminals through a network, a storage unit that stores not only product information on plural products and the information on incentives applied to the purchase of the products, and a control unit that displays the amount of incentives set for the plural products. In addition, the control unit performs a control operation to apply the incentive which corresponds to the amount of the contract price for purchasing the corresponding product, to a user who bids the minimal prices among plural users who bid prices by assessing a purchase page for each product through plural user terminals. Therefore, the user who wants to purchase a product online is able to get an actual discount benefit for the product and a seller who sells the product online is capable of having the maximal advertisement effect at a low price.

(57) 요약서: 본 발명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다음 쪽 계속]

WO 2010/027244 A2

---

본 발명의 상품판매서버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와;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복수의 유저 중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유저는 실질적인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적은 액수의 광고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명세서

###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

#### 기술분야

- [1] 본 발명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복수의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복수의 유저 중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배경기술

- [2] 주지된 바와 같이, 국내외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인바, 온라인 시장은 크게 온라인 광고 시장과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시장은 중국에는 회사나 제품에 대한 광고이므로 쇼핑시장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장이지만, 온라인 시장을 구분할 때에는 순수한 온라인 광고 시장과 쇼핑시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 [3]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주요 마케팅 방향은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효 소비고객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광고시장과 쇼핑시장은 결국 더 많은 고객에게 광고나 쇼핑정보를 노출시켜 상품 판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므로 다양한 광고기법이나 쇼핑 활성화 기법이 선보이고 있다.
- [5] 광고기법이나 쇼핑 활성화 기법은 대표적으로 고객에게 적립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열람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더 많은 광고 열람을 유도하고,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 [6]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법은 개개인의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지급받는 적립금이 매우 미비하므로 별반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광고를 통한 판매자의 마케팅이나, 쇼핑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었다.
- [7] 따라서, 본 출원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이 광고를 열람할 때 부여하는 적립금을 통합 처리하여 실시간 누적하고, 그 누적된 적립금을 어느 한 고객의 구매번호 발생시 다수의 회원이 공동으로 적립해놓은 통합 적립금을 해당 고객의 구매대금의 할인율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광고 열람을 활성화시키며, 쇼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회원 통합 적립형 포인트 제공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특허출원번호 10-2006-45900호, 10-2006-88063호)"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 [8] 하지만, 종래의 "회원 통합 적립형 포인트 제공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한

본 출원인의 특허는 온라인 경매업체,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는 획기적인 적립금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이었지만,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노출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고주보다 더 많은 클릭당 적립금을 제공해야만 자사 광고의 클릭 빈도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광고 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지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9] 또한, 인기가 많은 대형포털이나, 대형 전자상거래 쇼핑몰 등에서도 팝업창으로 이루어진 배너광고 또는 페이지 고정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광고는 대형 포털이나 대형 쇼핑몰과 광고주가 제휴되어야 하므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광고노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많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팝업창으로 이루어진 배너광고의 경우에는 유저가 키신호를 발생시키면 자동으로 배너광고가 메인화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페이지 고정형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서브페이지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광고도 역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광고 효과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적 과제

- [10]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온라인 상품 판매자의 경우에는 적은 액수의 광고비용으로도 큰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광고의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상품 구매 의사를 가지는 유저에게 실질적인 상품 가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 기술적 해결방법

- [11]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와;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복수의 유저 중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 [12] 여기에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 [13]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 [14] 또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될 수 있다.
- [15] 또한, 상기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될 수 있다.
- [16] 한편,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 [17] 여기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8]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이벤트에 설정된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 [19] 한편,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20] 여기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21]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22]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23]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할 수 있다.
- [24]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5] 한편, 본 발명의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다.
- [26]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크기를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7] 또한 본 발명은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는 단계;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된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제시된 입찰금액을 복수의 유저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 [28] 여기에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29] 여기에서,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0] 또한, 본 발명의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될 수 있다.
- [31] 또한, 본 발명의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되도록 할 수 있다.
- [32]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가 운영될 수 있다.
- [33] 여기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는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
- [34]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입찰 이벤트에 소정의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35]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36] 여기에서,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37]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더 낙찰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38]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39]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40]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41]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42]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유리한 효과

- [43]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유저의 경우, 복수의 상품의 구매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상기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상품 구매 비용에 적용되어 낙찰된 인센티브의 크기만큼 차감된 비용만을 지불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44]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적은 액수의 비용으로 상품의 판매 및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상기 인센티브에 대하여 진행되는 입찰에 낙찰되지 못한 유저도 상기 입찰에 응모함으로써 해당 유저가 입찰한 상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입찰 이벤트에 속해 있는 다른 복수의 상품에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저(또는 매수자) 양자에게 유리한 온라인 상품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45] 도 1은 본 발명의 상품판매서버장치의 구성 블록도이고,  
 [46] 도 2 및 도 3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47] 도 4 및 도 5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48]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49] 도 7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50]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51] 도 9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고,
- [52]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 [53]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도록 한다.
- [54] 도 1은 본 발명의 상품판매서버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 [55]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판매서버장치는 통신부(110), 저장부(120) 및 제어부(130)를 포함한다.
- [56] 상기 통신부(11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복수의 유저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 [57] 상기 저장부(120)는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 [58] 상기 상품정보는 판매자가 상품 판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게시되는 것으로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그 자체에 대한 상세 정보, 상품의 금액 정보 또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상품의 금액 정보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해당 상품의 정상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구매대금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9] 상기 인센티브는 유저로 하여금 판매자의 상품 구매를 촉진 또는 유인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품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 유저에게 부여되는 이익이다. 본 발명의 인센티브는 금전, 현물, 서비스 등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유저에게 이로운 소정의 행위와 같은 정신적인 이익도 포함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제공 형태에 있어서도, 상품의 가격 할인, 현금, 상품권,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 또는 구매 상품에 더하여 추가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품의 가격 할인이 바람직하다.
- [60] 상기 제어부(130)는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고,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복수의 유저 중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 [61] 상기 복수의 상품은,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복수의 상품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상품일 필요는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복수의 상품은 동일한 판매자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일 필요가 없고, 서로 다른 복수의 판매자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도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복수의 상품은 반드시 동일한 판매사이트 또는 구매 페이지일 필요 없고, 서로 다른 판매사이트 또는 구매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복수의 상품도 가능하다.
- [62] 따라서, 상기 제어부는 복수의 상품 각각이 게시되어 있는 서로 다른 판매사이트 또는 구매페이지에 상기 상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즉, A 구매페이지에서는 A 상품에 대한 정보게시와 함께 P금액의 인센티브가 표시되어 있으며, B 구매페이지에서는 B상품에 대한 정보게시와 함께 P 금액의 인센티브가 표시되어 있으며, C구매페이지에서는 C상품에 대한 정보게시와 함께 P금액의 인센티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구매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상품이 게시되어 있으나 동일한 크기의 인센티브 금액 (즉, 하나의 인센티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 [63]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어부는, 유저의 편의성을 위하여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유저가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입력부를 별도로 마련해 놓을 수 있다.
- [64] 따라서, 복수의 유저가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서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금액의 크기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하면,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에서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A유저가 A 구매페이지에서 A 상품에 대하여 1,000원 크기의 인센티브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고, B 유저가 B 구매페이지에서 B 상품에 대하여 980원 크기의 인센티브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고, C 유저가 C 구매페이지에서 C 상품에 대하여 970원 크기의 인센티브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으며, A유저 및 B유저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 C유저가 상기 인센티브 입찰에 낙찰되어, C상품의 정상 가격에서 상기 97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상기 C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 [65]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 [66] 여기에서, 상기 판매자의 계정정보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개수, 상기 상품의 판매사이트 또는 구매페이지 주소, 해당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판매자가 특정 상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금액은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으며, 한 판매자가 복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 상품 각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금액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 [67] 예를 들어, A 구매페이지에서 A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 판매자, B 구매페이지에서 B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 판매자 및 C 구매페이지에서 C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C 판매자가 상기 각 구매페이지에 표시된 P금액의 인센티브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당 판매자들의 계정정보를 갱신하는 것이다.
- [68] 여기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 [69] 예를 들어, 상기 A, B, C 구매페이지에 P금액의 인센티브가 표시되어 있다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A, B, C 판매자에게 모두 P/3 금액의 인센티브를 부담하도록 해당 판매자들의 계정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 [70] 따라서, 상기 A, B, C 구매페이지에 P금액의 인센티브가 표시되어 있어, A 유저는 A 상품을, B 유저는 B상품을, C 유저는 C상품에 대하여 각각 P금액의 인센티브에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낙찰받았다면, 상기 A 유저가 향유하는 인센티브는 결국 A, B, C 판매자 모두가 지원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A 판매자는 적은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나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이 되고, B 및 C 판매자는 비록 상품을 판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정보가 A, B, C 유저에게 노출되었으므로 그 광고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 [71]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될 수 있다.
- [72] 본 실시예의 유저의 열람량은, 유저가 상품의 판매광고정보를 열람하는 정도로서 그 양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유저의 열람량은, 클릭 횟수 등과 같이 어느 상품의 판매광고정보 페이지를 열어 본 열람횟수, 판매광고정보 페이지를 연 후 해당 페이지를 닫은 때까지의 시간과 같은 열람지속시간, 단일 광고정보 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한 유저의 수와 같은 동시접속인원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유저의 열람량에 따라 본 발명의 제어부는 미리 설정해 둔 소정의 금액을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복수의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제공할 수 있다.
- [73]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품의 카테고리 및 상품가격별로 별도의 클릭당 적립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즉, 50,000원의 정가를 갖는 MP3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1회 클릭하는 경우에는 15원의 금액이 적립되고, 50,000원의 정가를 갖는 청바지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1회 클릭하는 경우에는 20원의 금액이 적립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각 상품의 카테고리 또는 금액별 등록 수량에 따라 클릭 당 적립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즉, 등록된 상품 수가 많을수록 클릭 당 적립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등록된 상품 수가 적을수록 클릭 당 적립금액을 높일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유저의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당 상품 카테고리 및 상품가격별로 누적된 적립금액을 갱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7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상품의 구매대금(즉, 상품의 정상 판매 가격)의 1% 내지 1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품의 구매대금의 5% 내지 100% 중 어느 하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중 어느 하나,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1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 있다.
- [7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대금에 따라, 1원 에서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 10,001원에서 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 20,001원에서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 30,001원에서 4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 등과 같이, 일정 금액을 단위로 여러 금액군 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대금에 따라 상기 금액군 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상품의 구매대금은 12,000원이면 상기 10,001원에서 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에 포함시키고, B 상품의 구매대금이 35,000원이면 상기 30,001원에서 4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금액군 별로 복수의 상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금액군 별로 포함된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 [76] 여기에서, 상기 이벤트라 함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복수의 유저가 참여하는 입찰 이벤트를 의미한다.
- [77] 여기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라 함은, 상기 금액군별로 복수의 상품에 대한 이벤트가 복수 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78] 예를 들어, 상기 20,001원에서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에 20여개의 상품이 포함되고, 상기 20 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20,000원이고, 각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가 상기 인센티브에 대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최저 입찰금액이 5,000원인 경우, 상기 인센티브가 15,000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금액군에서는 상기 15,000원의 인센티브에 대하여 상기 인센티브가 낙찰된 상품을 제외한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가 다시 상기 인센티브에 대하여 입찰

이벤트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7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상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80]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어부가 상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를 100명으로 미리 설정하는 경우, 상기 20,001원에서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에 20여 개의 상품이 포함되고, 상기 20 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20,000원이고,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의 수가 120명이면, 상기 제어부에 의해 설정된 수를 넘게 되므로, 처음 100명의 유저가 하나의 이벤트에 대하여 상기 인센티브에 대한 입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20명의 유저에 대하여는 제 2 입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 따르면, 금액군 별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입찰 이벤트는 상기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의 수에 따라 복수 개 발생할 수 있다.

[8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이벤트에 설정된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즉,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찰 이벤트가 진행 가능한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상기 시간 안에는 복수의 유저가 자유로이 입찰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설정된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에서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2]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이 해당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83]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입찰 이벤트에 소정의 시간이 설정되는 경우, 상기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기 전 특정 시간을 설정하여, 상기 특정 시간에는 해당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이 해당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되지 않고 대체 영상을 표시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되는 입찰금액이 소정 크기에 도달하면, 그 이후 해당 입찰 이벤트가 종료할 때까지 해당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이 해당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되지 않고 대체 영상을 표시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8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는 하나의 입찰 이벤트에 있어서, 복수의 유저가 입찰금액을 제시할 때, 일정 단위 크기를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 [85] 예를 들어, 50,001원에서 60,000원이 속하는 금액군에 대하여 총 5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유저들이 5,000원 단위를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할 수 없도록 설정된 경우, 상기 입찰 이벤트에 대하여 복수의 유저가 입찰금액을 제시할 때, 제1유저가 49,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제2유저가 48,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제3유저가 40,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제3유저는 제2유저와 8,000원의 차이가 나는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제3유저의 입찰금액 제시는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8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87] 예를 들어, A, B, C 상품에 대하여 P금액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상기 A, B, C 상품 각각의 A, B, C 판매자가 상기 인센티브 P금액에 대하여 각자 1/3씩 부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상기 A, B, C 상품에 대하여 A, B, C 유저가 상기 P금액의 인센티브에 대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상기 A 유저가 2/3P 금액이 최저 입찰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A 판매자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기로 한 1/3P 금액 크기의 인센티브보다 더 많은 2/3P 금액의 인센티브가 A 유저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럴 경우, 초과 1/3P 금액에 대하여는 B, C 판매자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제어부의 설정 또는 판매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상기 초과 1/3P 금액에 대하여 B 및 C 판매자가 1:1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88] 예를 들어, 50,001원에서 60,000원이 속하는 금액군에 대하여 총 5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상기 금액군에 속하는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총 25명의 판매자들이 각자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설정하였다면, 상기 금액군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총 125,000원이 된다. 만약 어느 유저가 50,000원의 청바지 상품에 대하여 20,000원의 인센티브 금액에 대하여 낙찰받았으면, 상기 상품의 판매자는 10%인 5,000원을 상기 낙찰자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나머지 15,000원에 대하여는 상기 비판매자 24명이 1/24로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원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89] 여기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90] 예를 들어, 50,001원에서 60,000원이 속하는 금액군에 대하여 총 5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상기 금액군에 속하는 3개의 상품에 대하여 총 3명의 판매자, A, B, C가 각자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설정하였다면, 상기 금액군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금액의 크기는 15,000원이 된다. 이 때, A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유저에 의하여 15,000원 크기의 인센티브가 낙찰되면, A 판매자가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나머지

10,000원의 인센티브는 B 및 C 판매자가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B 판매자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한 유저가 100명이고, C 판매자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한 유저는 50명이면, 상기 초과 인센티브 10,000원에 대하여 상품의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B 판매자가 6,666원을, C 판매자가 3,333원을 지원하게 된다.

- [91]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92] 예를 들어, 상기 20,001원에서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군에 20여개의 상품이 포함되고, 상기 20 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20,000원이고, 각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들이 상기 인센티브에 대하여 각각 5,000원, 5,500원, 6,000원, 7,000원 등 입찰금액을 제시하면, 최저 입찰금액인 5,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낙찰되고, 인센티브는 15,000원이 남게 된다.
- [93] 이 경우, 상기 제어부는 설정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특정 수의 유저에게 상기 남은 인센티브 15,000원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상기 특정 수의 유저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94] 여기에서 상기 특정 수의 유저는 상기 제어부의 설정에 따른다.
- [95] 또한, 상기 제어부는 설정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상기 5,500원 및 6,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를 추가로 낙찰되도록 할 수 있다. 즉, 원래 제시하였던 입찰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추가로 낙찰되는 유저의 수는 상기 제어부의 설정에 따른다.
- [96] 또한, 상기 제어부는 설정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특정 수의 유저를 설정하여,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작은 크기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 [97] 여기에서, 본 발명은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98] 예를 들어, 50,001원에서 60,000원이 속하는 금액군은 총 5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상기 금액군에 속하는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총 25명의 판매자가 각자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설정하고, 또한 복수의 낙찰을 위하여 상기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로 10%를 더 지원하기로 설정한다. 이때, 3명의 유저가 상기 인센티브 입찰 이벤트에 참여하여 각각 12%, 13%, 16%의 인센티브 크기를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다. 상기 12%의 입찰금액은 2%초과, 13%의 입찰금액은 3% 초과, 16%의 입찰금액은

6% 초과되고, 이들의 합은 모두 11%가 되어 상기 판매자들에 의해 설정된 추가 인센티브 크기 10%가 초과된다. 이 경우에는,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12%, 및 13% 입찰 금액을 제시한 유저가 낙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두 개의 입찰에 대응한 각각 상품의 각각 판매자가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 인센티브 5%는 상기 상품 판매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판매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원하게 된다. 만약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3명의 유저가 상기 인센티브 입찰 이벤트에 참여하여 각각 12%, 13%, 15%의 인센티브 크기를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다면, 총 10%에 해당되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초과되었고, 이는 판매자들이 설정된 범위 내이므로, 상기 12%, 13%, 15%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 모두가 낙찰될 수 있다.

- [99]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판매자가 지원하는 추가 인센티브의 크기는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A 판매자는 총 10%의 기본 인센티브만 지원하기로 하고, B 판매자는 10% 기본 인센티브 이외의 5%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설정하고, A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제1 유저가 12%의 인센티브 크기로 입찰되고, B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제2 유저가 16%의 인센티브 크기로 입찰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때, 제1유저는 기본 10%의 인센티브 중 1%의 초과 인센티브와 제2 유저의 경우 B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로 인하여 11%의 인센티브 크기로 입찰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본 인센티브 10%에서 초과된 1%의 인센티브 크기, 즉 총 3%의 인센티브만 나머지 비판매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100]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할 수 있다.
- [101] 여기에서 상기 보전금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현금도 가능하며, 현물/상품으로 상계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보전금은 판매자가 다른 상품에 대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에서 차감될 수도 있다.
- [102] 여기에서 상기 미리 정해진 소정액은 상품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기 제어부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이다.
- [103]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0,001원에서 110,000원이 속하는 금액군에 대하여 총 10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상기 금액군에 속하는 10개의 상품, A1 내지 A10에 대하여 총 10명의 판매자들, A1 내지 A10이 각자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 크기에 대하여 70%를 초과하여 유저에 의하여 인센티브가 낙찰되면, 초과된 크기만큼 해당 판매자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에서 차감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A1상품에 대하여 유저가 80,000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낙찰받으면, 상기 제어부가 설정해 놓은 인센티브의 70%인 70,000원보다

10,000원이 초과된 인센티브 크기가 낙찰된 것이다. 이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초과된 10,000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품의 판매자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에서 차감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10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00원의 상품 가격을 갖는 청바지에 대하여 100,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경우, 유저는 최저 입찰금액이 95,000-90,000원 사이에 해당하면, 89,900원으로 자동 입찰 처리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만약 최저 입찰금액이 50,000-45,000원 사이에 해당하면, 40,000원으로 자동 입찰 처리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만약 최저 입찰금액이 20,000-15,000원 사이에 해당하면, 10,000원으로 자동 입찰 처리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자동 입찰을 설정한 유저는 상기와 같은 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 [105] 표 1

순번	인센티브 구간	설정금액
1	95,000-90,000원	89,900원
2	50,000-45,000원	40,000원
3	20,000-15,000원	10,000원

- [10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다.
- [107] 본 실시예에서, 제어부는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속하는 금액군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부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판매자의 경우에는 상기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기 판매자가 부담해야할 인센티브 중에서 일부를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추후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거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 [108] 예를 들어, 개별 판매자가 부담해야할 인센티브의 크기가 50,000원인 경우, A 판매자는 자신이 35,000원이 제공하고, 투자자가 15,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익분 70%, 손해분 60%”로 설정하여 판매자와 투자자 사이에 계약이 설정된다. 이 때, 상품에 대하여 인센티브 금액이 50,000원이 낙찰되면, 투자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인센티브인 35,000원을 초과한 15,000원에 대하여 손해분 60%인 9,00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편, 상품에 대하여 인센티브 금액이 20,000원이 낙찰되면, 투자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인센티브인 35,000원에서 20,000원을 제외한 15,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5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기 손해분 및 수익분이 상기 투자자의 계정정보로 지속적으로 산입 또는 차감되는 것이다.

[10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본 발명의 제어부는,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크기를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10] 예를 들어, 1,000,000원의 상품이 있으면, 판매자는 유저가 지원 가능한 최저 입찰 금액을 95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만원 이상이 된다. 만약 유저가 95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11]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112]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은,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도면 미도시);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는 단계(S100);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해당 제시된 입찰금액을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S120); 및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S180)를 포함한다.

[113] 상세하게는, 먼저 복수의 상품의 복수의 판매자에 의하여,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 및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도면 미도시).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표시하게 된다(S100). 이 때, 입찰 이벤트 개시 시간이 도래하면(S110),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에 의한 입찰금액이 제시된다(S120). 상기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을 수신, 저장하여, 저장된 입찰금액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을 해당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한다(S130). 미리 설정해둔 입찰 이벤트 시간이 종료되면(S140),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가 낙찰된다(S150). 해당 유저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구매요청이 되면(S160), 상기 낙찰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S180) 지원된 인센티브가 적용된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대하여 결제가 완료되면(S190), 지원된 인센티브만큼 인센티브 금액의 정보를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S200). 만약, 낙찰된 유저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에 대하여 취소처리가 된다(S170).

- [114] 여기에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15] 바람직하게는,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 [116]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플로우차트로서, 상품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따른 누적 적립금액을 인센티브로서 적용되는 예에 관한 것이다.
- [11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될 수 있다.
- [118]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상품의 복수의 판매자에 의하여,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가 저장되고(도면 미도시), 상기 복수의 상품의 상품정보가 표시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따라 적립될 금액을 설정하여 둔다(도면 미도시). 이에 유저의 상기 구매페이지의 클릭이 발생하면, 클릭 횟수에 따라 적립금액을 누적한다(S300). 또한, 상기 누적된 적립금액을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에 인센티브로써 표시한다(S310). 이 때, 입찰 이벤트 개시 시간이 도래하면(S320),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에 의한 입찰금액이 제시된다(S330). 상기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을 수신, 저장하여, 저장된 입찰금액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된 입찰금액을 해당 복수의 유저의 단말기에 표시한다(S340). 미리 설정해둔 입찰 이벤트 시간이 종료되면(S350),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가 낙찰된다(S360). 해당 유저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구매요청이 되면(S370), 상기 낙찰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S390) 지원된 인센티브가 적용된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대하여 결제가 완료되면(S400), 지원된 인센티브만큼 인센티브 금액의 정보를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S410). 만약, 낙찰된 유저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에 대하여 취소처리가 된다(S380).
- [119]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될 수 있다.
- [120]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로서, 금액군 별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121]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판매방법은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가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즉, 상품의 구매대금의 크기에 따라 금액군을 미리 설정한다(S500). 이에 의해, 복수의

판매자가 복수의 상품을 등록하면(S510), 해당 등록 상품의 구매대금에 따라 금액군 별로 상기 복수의 상품이 각각 포함되도록 설정한다(S520). 따라서, 복수의 금액군이 형성되면, 각 금액군 별로 해당 복수의 상품의 각각 구매페이지에 각 인센티브 금액을 표시하여(S530), 각 금액군 별로 입찰 이벤트를 진행한다(S540). 또한, 상기 금액군 별로 진행되는 입찰 이벤트는, 해당 금액군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모두 유저에 의해 낙찰되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다시 시작되어 복수 번의 입찰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다.

- [122] 또한,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로서, 금액군 별 복수 개의 입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각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가 운영될 수 있다.
- [12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각 금액군 별로 입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저의 수를 설정할 수 있다(도면 미도시). 이에 의해, 어느 한 금액군에 대하여 입찰 이벤트가 개시되면(S600), 참여한 유저의 수가 설정된 수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S610), 초과되지 않으면 입찰 이벤트를 진행하고(S620) 초과되면 초과된 수의 유저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S630). 이에 의하여, 각 금액군별로 복수 개의 입찰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다.
- [124]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입찰 이벤트에 소정의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125]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 분담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26] 여기에서,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 [127]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로서, 복수의 낙찰자에 대한 것이다.
- [128]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더 낙찰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129] 상세하게는, 미리 복수의 낙찰자가 발생되도록 설정하고(S700), 입찰 이벤트를 개시하여(S710) 복수의 유저로부터 입찰 금액이 제시되면, 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S720). 미리 설정해둔 입찰 이벤트의 시간이 종료되면(S730),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가 낙찰되도록 하고(S740), 또한,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하는 것이다(S750).
- [130] 여기에서,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131]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32] 도 9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로서, 자동 입찰에 대한 것이다.

[133]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자동 입찰한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34] 상세하게는, 제1 유저가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될 금액 구간을 설정하고, 자신의 입찰금액을 미리 설정하고(S800), 입찰 이벤트가 개시된다(S810). 제2유저가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하면(S820),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제1유저가 설정한 금액 구간에 포함되면(S830), 제1 유저가 상기 금액 구간에 대하여 미리 설정해둔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되어(S850), 제1 유저가 낙찰받게 된다(S860). 만약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제1 유저가 설정한 금액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2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으로 낙찰된다(S850).

[135]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36]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로우차트로서, 유저에 의해 제시가능한 최고 인센티브 금액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137] 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38] 상세하게는, 유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인센티브 금액을 미리 설정한다(S900). 입찰 이벤트가 개시되면(S910), 유저에 의해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상기 설정된 최고 인센티브 금액을 초과하면(S920), 해당 유저에 의한 입찰금액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S940).

[139] 상기 본 발명의 온라인 상품판매방법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상기 상품판매서버장치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140] 비록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실시예를 변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 균등물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 [141] 본 발명은 온라인 상품판매를 위한 상품판매서버장치 및 그 상품판매방법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유저의 경우, 복수의 상품의 구매에 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상기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상품 구매 비용에 적용되어 낙찰된 인센티브의 크기만큼 차감된 비용만을 지불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적은 액수의 비용으로 상품의 판매 및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상기 인센티브에 대하여 진행되는 입찰에 낙찰되지 못한 유저도 상기 입찰에 응모함으로써 해당 유저가 입찰한 상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입찰 이벤트에 속해 있는 다른 복수의 상품에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저(또는 매수자) 양자에게 유리한 온라인 상품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

## 청구범위

- [1]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수의 유저단말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와;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복수의 유저 중 최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하는 상품판매서버장치.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찰 이벤트에 설정된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어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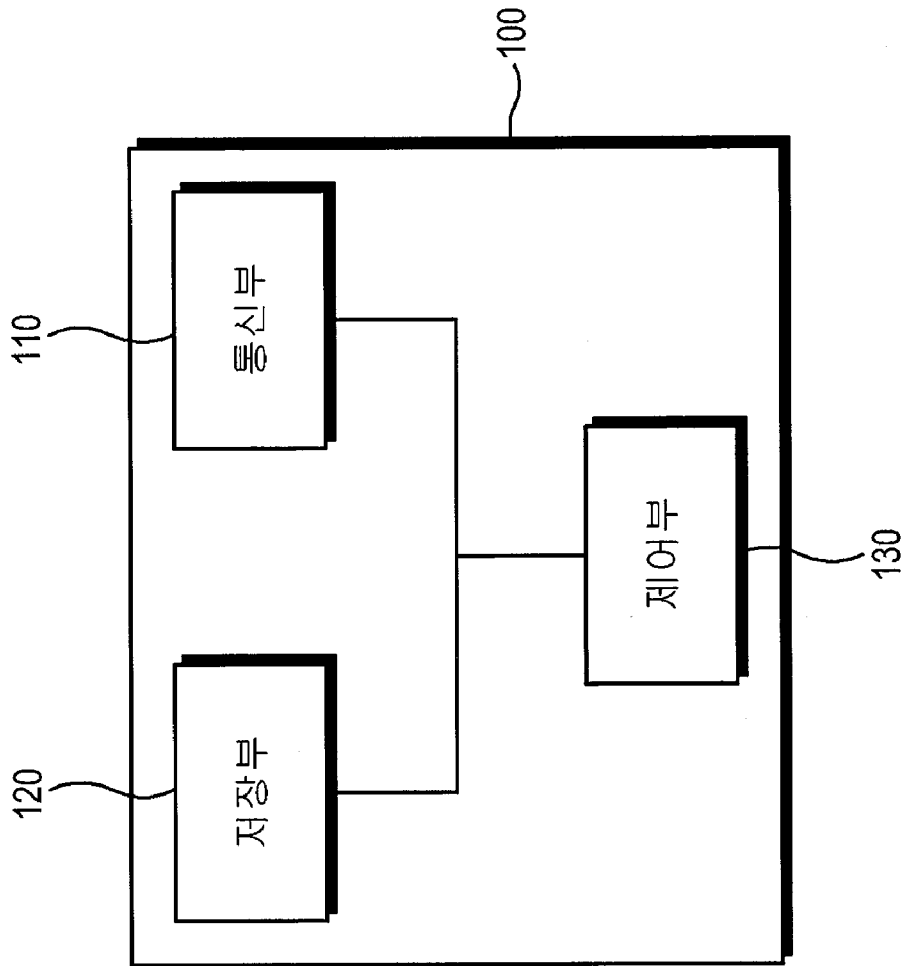
-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도록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 상품판매서버장치.
- [17]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와, 상기 상품의 구매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금액을 표시하는 단계;  
복수의 상품 각각의 구매페이지에 접속된 복수의 유저 단말기를 통하여 제시된 입찰금액을 복수의 유저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입찰금액을 제시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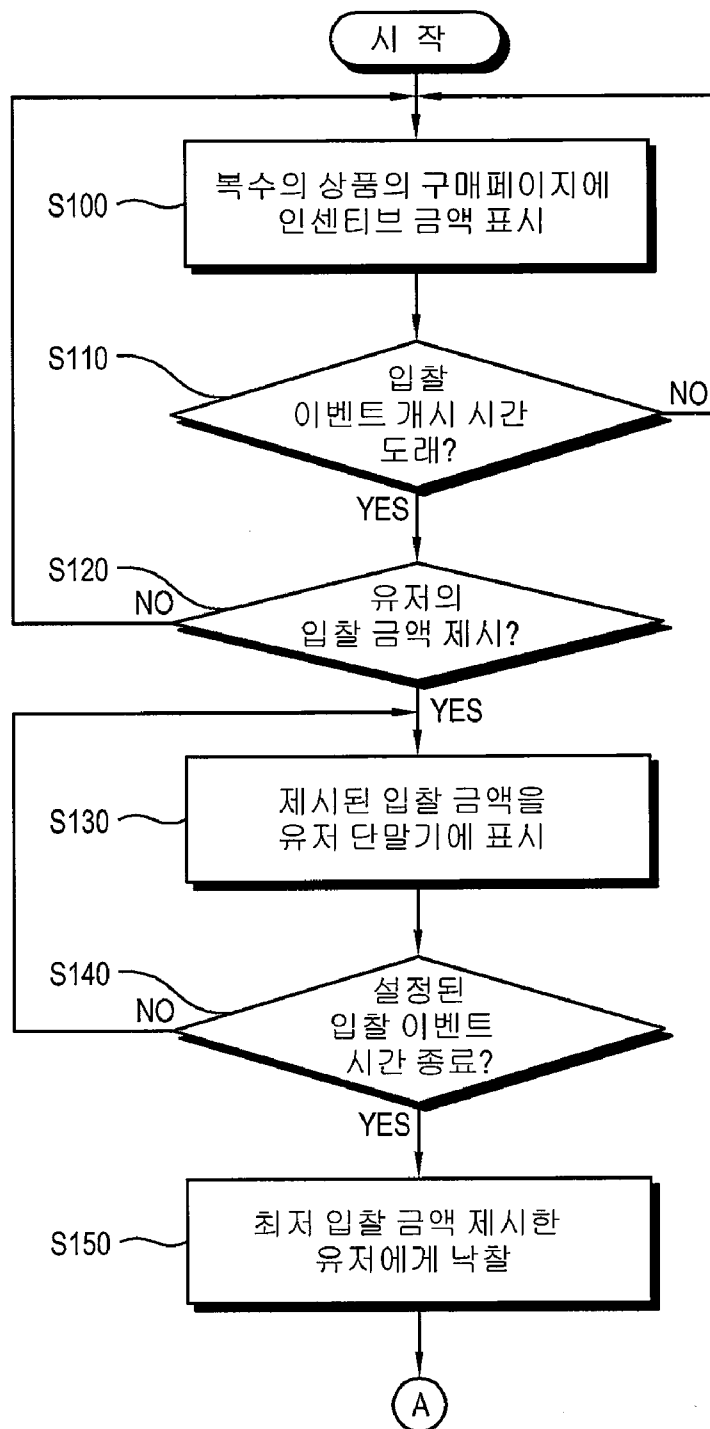
-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가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계정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품 각각에 대응하는 복수의 판매자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상품에 대하여 설정된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상품의 구매페이지를 열람하는 복수의 유저의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열람량에 따른 적립금액은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의 크기는 상기 복수의 상품 중 어느 하나의 구매대금의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크기로 결정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품의 금액군 별로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가 운영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입찰 이벤트는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유저의 수가 제한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입찰 이벤트에 소정의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시간이 종료되면, 상기 입찰 이벤트에 참여한 복수의 유저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금에 낙찰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낙찰된 유저의 최저 입찰금액이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 의해 인센티브로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초과된 입찰금액의 차액은 비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페이지의 열람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 것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유저와,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의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이 상기 추가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 속하면, 상기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적어도 하나의 유저가 낙찰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2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의 낙찰금액이 미리 정해진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으로부터 차감되도록 상기 인센티브의 보전금에 관한 계정정보를 갱신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3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시된 최저 입찰금액이 유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금액구간에 해당되면, 상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설정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3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투자자의 계정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금액을 상기 투자자의 계정에 산입 또는 상기 투자자의 계정으로부터 차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 [3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유저에 의해 제시 가능한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최저의 입찰금액이 상기 최고 인센티브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장치의 상품판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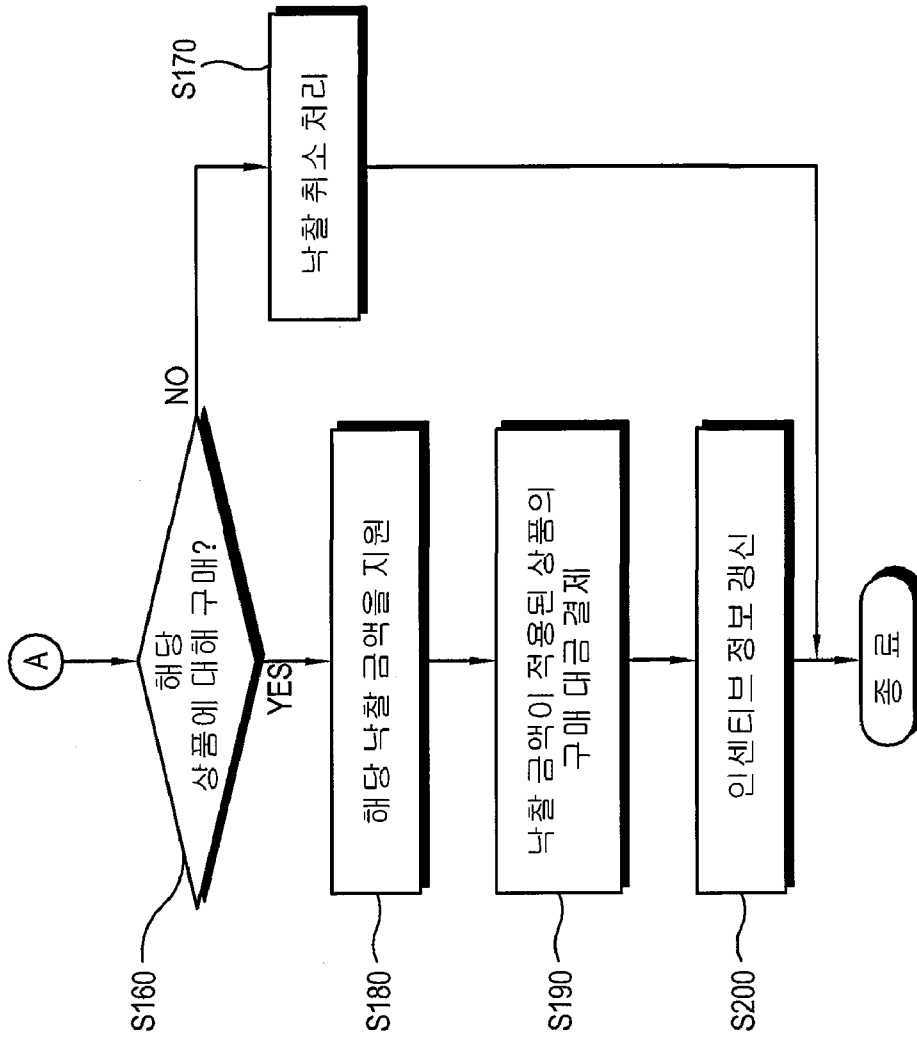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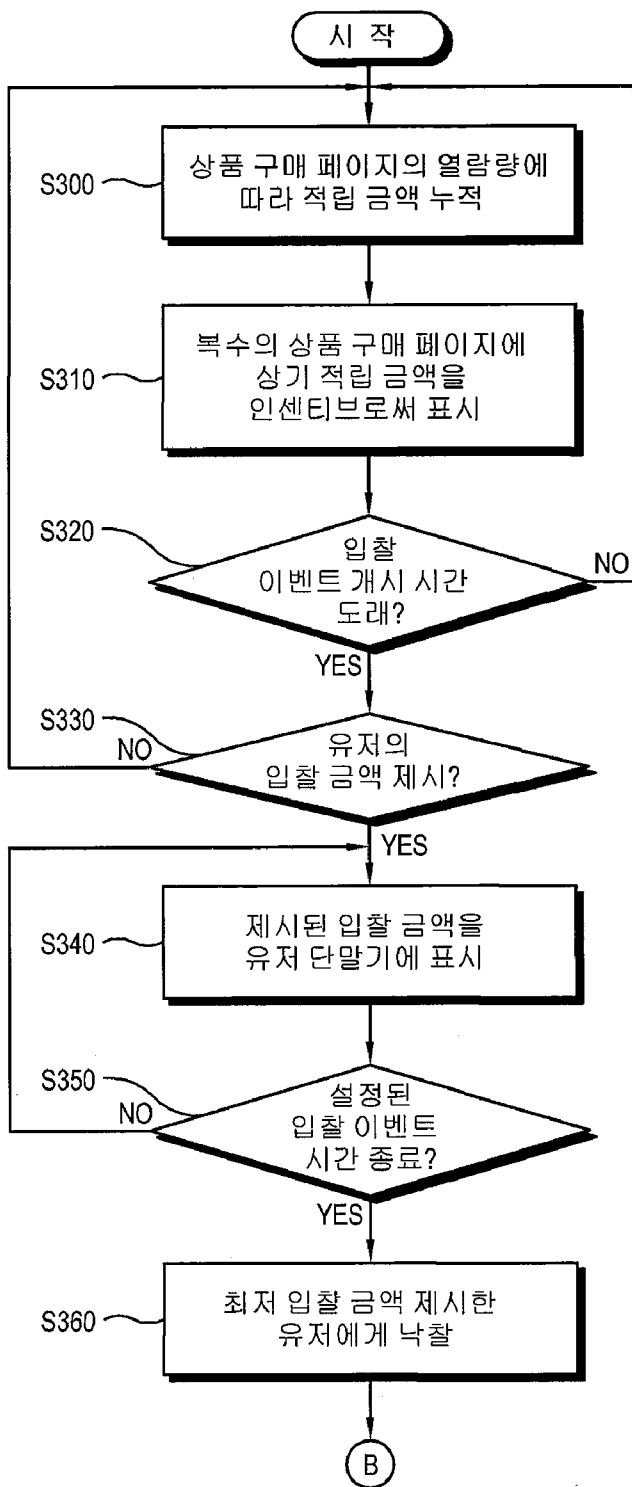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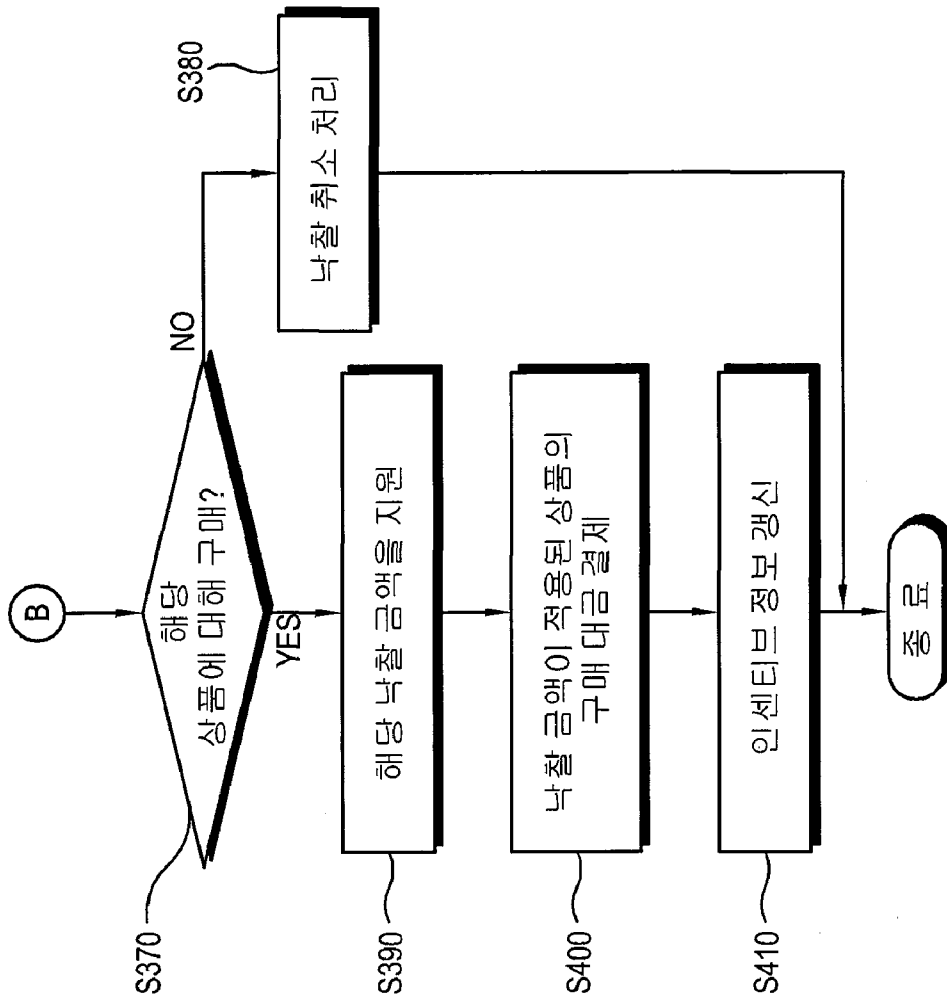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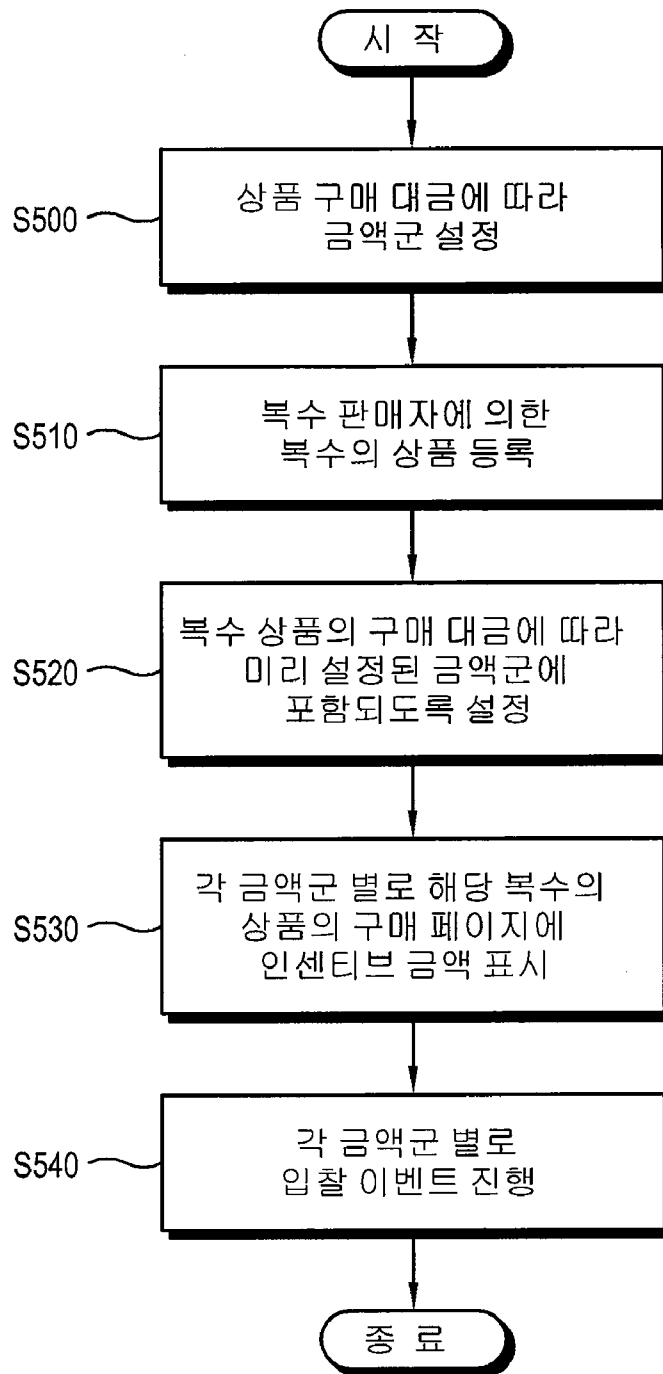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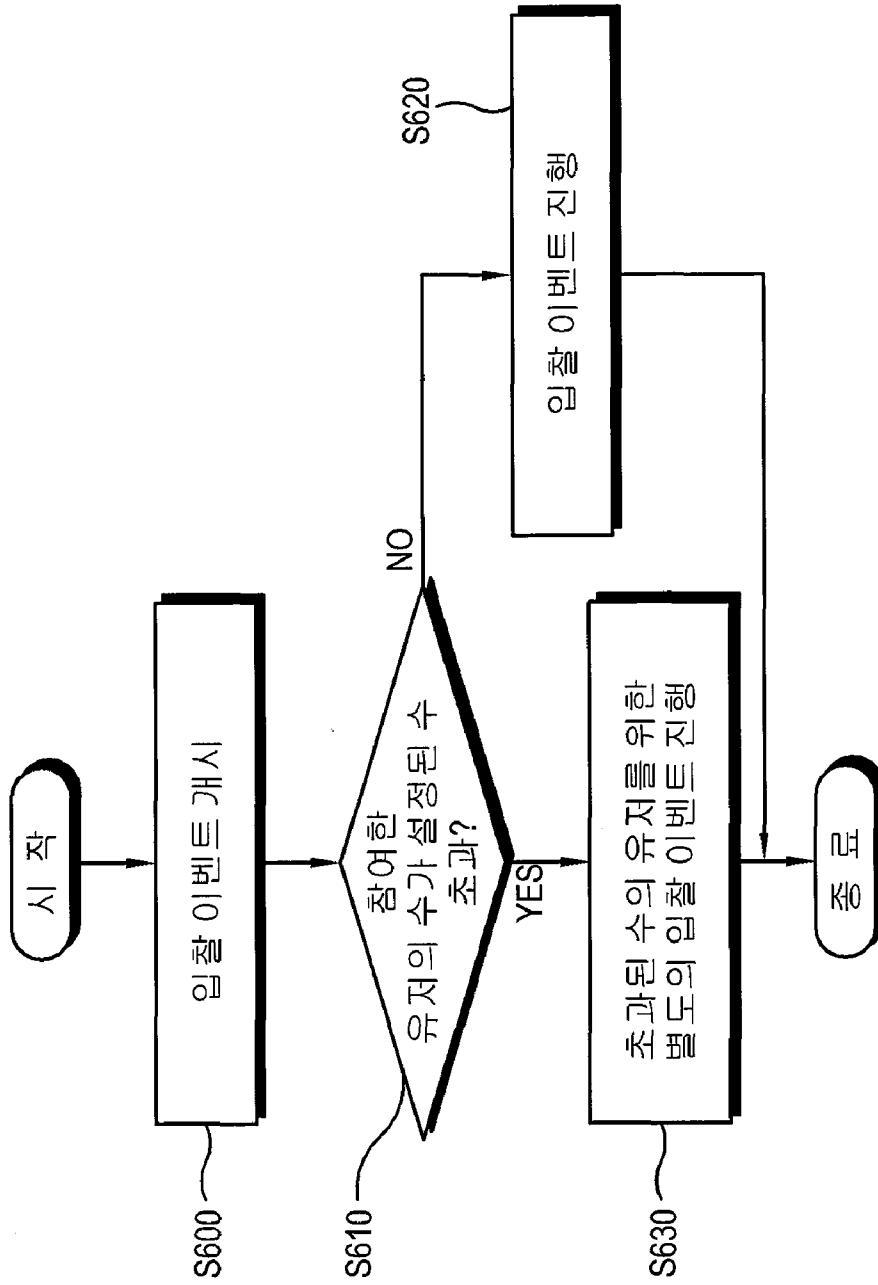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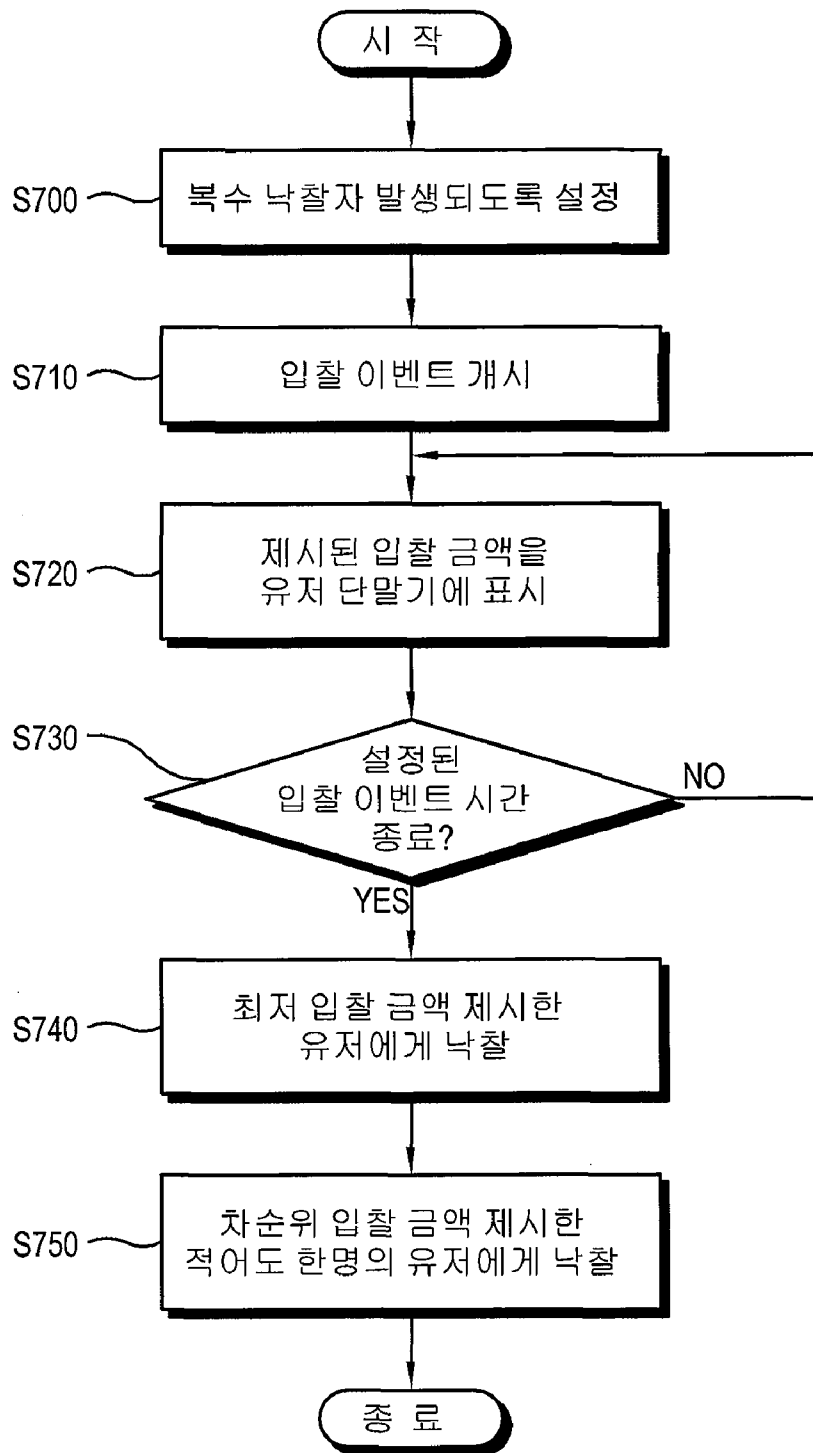
[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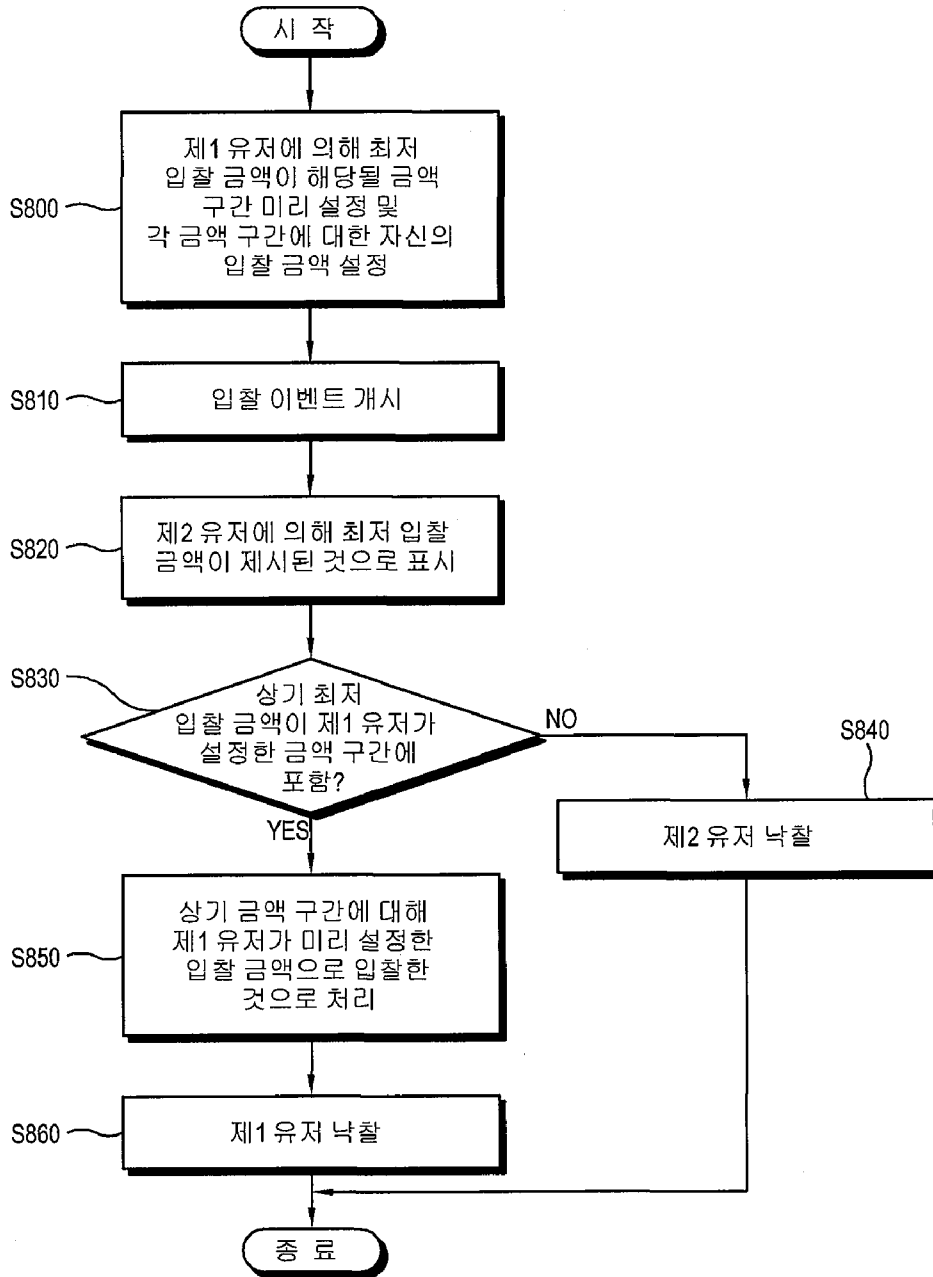
[Fig. 7]



[Fig. 8]



[Fig. 9]



[Fig. 10]

